한형주
성북선잠박물관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선시대의 왕비의 일생과 수렴청정

1. 머리말
2. 왕비의 명칭과 명부
3. 왕비의 책봉과 권한
4. 대비의 수렴청정

조선시대의 왕비의 일생과 수렴청정

한형주 _성북선잠박물관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 머리말

조선시대의 왕비는 왕의 정실부인을 말하는데,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왕비, 중궁, 중전 등으로 불리어지다가 왕이 사망했을 때에는 '대비'로 호칭되는 조선의 여성 중에서 가장 존귀(尊貴)한 존재였다. 그녀는 살아생전에 왕과 더불어 '지존'으로 받들여졌으며, 죽었을 때에 그녀의 무덤은 여타의 사람들과 달리 '능'으로 지칭되고 존중되는 최고의 인물이었다.

이러한 왕비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는 아니었다. 책봉되기 이전에는 일반 사대부의 딸로 살아왔지만 일단 왕비로 책봉된 뒤에는 이념상으로 왕과 등등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더욱이 남편인 왕이 자기보다 먼저 사망하고 자식인 세자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경우에는 조선 최고의 존엄의 대상이 되고, 그 명칭은 '대비'로 추숭되었으며, 만약에 새 왕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대비로서 수렴청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왕비가 혼인의 과정을 통하여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왕비의 명칭과 그 수하로 취급되는 명부(내명부, 외명부)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칭호들을 통하여 왕실의 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 두 번째로는 왕비의 책봉으로 그녀가 가지게 될 임무와 권한을 설명하고, 왕비를 산출한 가문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왕비가 왕보다 오래 살아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할 경우 어떠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정희왕후, 문정왕후, 정순왕후 등의 사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왕비의 명칭과 명부

왕실에 존재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몇 단계로 구성되고 분리된다. 즉, 위로는 왕의 배우자인 왕비와 세자의 배우자인 세자빈, 그리고 왕과 왕비의 소생들, 세자와 세자빈의 소생들, 그리고 왕의 측실인 후궁과 그 소생들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이 올바른 궁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궁 이하의 궁관(궁녀)이 그 뒤를 구성한다. 비빈을 취하는 목적이 '내치를 바르게 하여 위로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라는 당위론은 법적으로 왕이 후궁을 두도록 설정하고 있다.

공주와 옹주는 왕과 왕비 또는 후궁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말한다. 공주는 적실인 왕비에게 낳은 자식을 말하고, 옹주는 후궁의 소생을 각기 말한다. 아들인 경우 왕비의 소생을 대군, 후궁의 소생을 군이라 칭하는 것에 대비된 칭호이다. 그런데 공주와 옹주는 품계가 없는 존재이다. 모든 관료들은 1품~9품의 품계를 갖고 있지만 왕과 왕비 및 그들의 자식인 대군, 군, 공주, 옹주 등은 품계를 넘어선 1품 위의 무품(無品)인 존귀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공주와 옹주의 남편들은 국가에서 결혼과 동시에 1품이나 2품의 관직을 주고, 의빈부라는 관청에 속하게 하는데, 이들은 나중에 1품관으로 오를 수가 있었다. 공주와 옹주들은 오빠나 남동생들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반하여 여자들은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고, 귀염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성격이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궁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왕과 세자빈 내외,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왕과 왕세자의 어린 자식들뿐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10세 내외에 결혼을 해서 궁 밖으로 옮겨 살림살이를 내게 되니 말 그대로 궁에는 왕과 세자밖에는 남자가 없었다. 이곳을 채운 것이 후궁 및 수많은 궁녀들이었고, 또한 한편으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환관들이었다.

왕비 밑에는 명부(命婦)라고 부르는 여성 집단이 있었다. 명부는 부인으로 봉호(封號)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궁궐 내에 거주하는 내명부와 궁 밖의 외명부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후궁(내관)과 궁인(궁관)들의 합칭이다. 내관은 왕의 후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정 1품 빈(嬪)부터 종 4품의 숙원(淑媛)까지로 구분된다.(표 1 참조) 물론 후궁은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경국대전』의 내명부 품계표

관품	왕궁(王宮)	세자궁(世子宮)	비고
정1품(正一品])	빈(嬪)		내관(內官)
종1품(從一品)	귀인(貴人)		
정2품(正二品])	소의(昭儀)		
종2품(從二品)	숙의(淑儀)	양제(良娣)	
정3품(正三品])	소용(昭容)		
종3품(從三品)	숙용(淑容)	양원(良媛)	
정4품(正四品])	소원(昭媛)		
종4품(從四品)	숙원(淑媛)	승휘(承徽)	
정5품(正五品])	상궁(尙宮) 상의(尙儀)		궁관(宮官)
종5품(從五品)	상복(尙服) 상식(尙食)	소훈(昭訓)	
정6품(正六品])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從六品)	상정(尙正) 상기(尙記)	수윤(守閏) 수칙(守則)	
정7품(正七品])	전빈(典賓) 전의(典衣) 전선(典膳)		
종7품(從七品)	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장찬(掌饌) 장정(掌正)	
정8품(正八品])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從八品)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장서(掌書) 장봉(掌縫)	
정9품(正九品])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從九品)	주변징(奏變徵) 주징(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간택 후궁은 공식적인 간택절차를 통해 혼례를 치룬 후궁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가례색을 설치하고, 금혼령을 발동하는 등 왕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뽑은 경우로 명문사대부의 여식들이 여기에 속하였다. 숙종 후궁인 영빈 이씨, 장조의 원빈 홍씨, 수빈 박씨, 화빈 박씨 등이 그 예이며, 이들은 종 2품 숙의에서 시작하여 뒷날 1품까지 승진한다. 승은 후궁은 종 4품 숙원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먹거나 공로가 있으면 최고 빈까지 승진한다. 예컨대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는 7세에 궁녀로 들어와 17세에 숙원이 책봉되었고, 18세에 숙의가 되었으며, 20세에 다시 귀인으로 승진하였고, 24세에 숙빈으로 승급하여 최고의 빈까지 이르렀다.

궁관은 궁중에서 국왕 곁에 있으면서 왕과 왕비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여인으로 내직(內職) 혹은 궁관(宮官), 여관(女官) 등으로 지칭되는 사람이다. 임무와 직책에 따라 각종 명칭과 품계가 있는데 정5품 상궁부터 종9품 주변궁까지를 이른다.

이러한 내명부와 달리 외명부는 종친과 문부백관 등 남편의 관직에 따라 맡은 여인들의 관직체계상의 제도를 말한다. 왕실로는 부부인府夫人(왕비의 어머니, 정1품), 봉보부인奉保夫人(왕의 유모, 종1품), 군주君主(세자의 적녀, 정2품), 현주縣主(세자의 서녀, 정3품) 등이 있고, 종친으로는 부부인(대군의 처, 정1품), 군부인郡夫人(왕자·군의 처, 정1품, 후에 종1품이 됨), 현부인縣夫人(정·종2품) 등이 있다. 또한 문·무관으로는 정경부인(1품)과 정부인(2품), 숙부인(정3품 당상관), 숙인(정·종 3품) 등이 있었다.

3. 왕비의 책봉과 권한

왕비는 궁전의 위치에 따라 중궁(中宮), 중전(中殿), 내전(內殿) 등으로 호칭된다. 왕비로 책봉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젊은 나이에 세자의 짝이 되어 세자빈으로 있다가 시아버지인 왕이 죽으면 세자와 함께 왕과 왕비로 책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세자빈이 아니라 대군이나 군부인으로 있다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왕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후궁에서 왕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궁에서 왕비가 된 경우는 성종의 폐비 윤씨나 숙종의 폐비인 희빈 장씨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후궁으로 원자를 낳은 경우 정비로 승

격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후궁은 처음부터 첩이라며 중전으로 승격하는 것을 대신들이 대부분 반대하였다.

간택의 과정은 전국의 8-20세 전후의 처녀들에게 먼저 금혼령을 실시하여 혼인을 금지하고, 이후에 가례색을 설치하고 세자빈(왕비)을 뽑는 과정을 겪는다. 이때는 간택의 조건으로 세 가지, 즉 세계, 부덕, 자색으로 뽑는데, 한곳에 모아 선발하지 않고 개별 처녀가를 선택하여 선택된 자를 모아서 다시 최종적으로 선출하였다. 선택된 왕비의 가문은 청주한씨, 여흥민씨,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의 명문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뽑힌 가문에는 왕비 부모를 봉작(부원군 및 부부인-정1품)하거나 읍호(邑號)를 승격하여 탄생지를 비롯한 연고지의 읍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탄생된 왕비의 임무는 궁내의 일을 주관하고, 국왕을 내조하며, 위로는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윗 전(대비전 생존시)을 모시며, 아래로는 왕자, 왕손을 양육하여 대통을 잇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내외명부(內外命婦)를 통솔하고 왕실의 대통을 잇는 일 등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왕비의 권한은 왕의 사후에도 이어져 대비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즉 국왕 사후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등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왕의 나이가 어릴 경우 수렴청정을 시행한다.

4. 대비의 수렴청정

수렴청정은 대비가 발을 내리고[垂簾] 국가의 정무를 보는 행위[聽政]를 말한다. 이때 대비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왕을 대신하여 국권을 장악하는데, 즉위한 왕이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을 경우 시행되며, 이때 대비는 국왕이 정치권을 행사하는 전 영역에 걸쳐 권한을 시행하였다. 조선시대 전체로 볼 때 수렴청정은 성종, 명종, 선조, 순종, 헌종, 철종, 고종의 시대 등 총 7차례가 시행되었다. 수렴청정의 시기에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여성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 국정을 좌우하던

때로, 이 시기의 대비는 흔히 여주(女主, 여자군주)로 불릴 정도였다. 아마도 남성 중심 사회에서 대비의 수렴청정을 허용했던 것은 최소한 대비가 왕으로 즉위할 수 없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 대비가 왕실 최고의 어른으로 어린 왕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수렴청정을 할 때 대비의 권한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몇몇 대신을 불러 국가의 현안을 의논하는 인견(引見)이라는 형태이고, 또 하나는 대비가 편전에 나가 발을 드리우고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는 형태이다. 이때 대비와 왕, 신하의 위차가 정해진다. 처음에 수렴청정을 했던 정희왕후 때는 주로 인견의 형태를 취하여 신하들을 불렀고, 반면에 편전에서 신하들과 만나는 과정은 두 번째의 수렴청정인 명종대의 문정왕후 이후에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수렴청정은 7차례의 사례가 있지만 이 중 정희왕후와 문정왕후, 정순왕후의 3차례가 특별한 사례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이 3 차례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렴청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세조비 정희왕후이다. 세조가 죽고 아들인 예종이 왕이 되었을 때 정희왕후는 대비가 되었는데, 이후 다시 예종이 사망하면서 다음 대 보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정희왕후는 제안대군(예종의 아들), 월산군, 자을산군(의경세자의 아들) 중에 자을산군을 왕으로 선출하였다. 그때 자을산군은 13세의 나이로 자질이 뛰어났고, 거기에 장인이 훈구대신인 한명회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녀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 훈구 대신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였다.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 원상과 승지를 대동하였지만, 두대(豆大)라는 인물을 등용하여 서기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두대는 문자에 밝아 정희왕후의 명령을 글로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성종의 나이 20세에 청정을 그만두었다.

두 번째는 문정왕후의 사례이다. 인종이 사망하고 친아들인 명종이 즉위하면서(12살) 문정왕후는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전처의 자식인 인종을 괄시하여 죽은 인종의 국장을 제대로 치루지 않았고, 또한 을사사화를 일으켜 인종의 외척인 대윤을 대규모 숙청하였으며, 2년 뒤 양재역 벽서사건 이후 다시 대윤에 정치적 보복을 가하였다. 이때 문정왕후는 봉은사의 주지인 보우를 등용하거나 선교(禪敎) 양종을 부활시켜 불교의 부흥을 꾀

하였다. 명종의 나이 20세에 수렴청정이 끝났으나 이후에도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왕을 구타하기까지 하였다고『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기술되어 있다.

세 번째는 정순왕후의 경우이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정조 사후 순조가 왕이 되자 증조모로서 수렴청정을 4년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조 시기에 나경원이라는 자가 세자의 난행과 비행을 고발하여 결국 영조가 세자를 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정순왕후의 친아버지인 김한구가 나경원을 사주한 주요 인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순왕후는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나 정조의 사후 순조가 왕이 되면서 다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신유박해를 일으켜 천주교도를 처단하였는데, 사실 이곳에 시파 및 종친들이 연관되어 있었고, 또 한편 정조대 대표적인 군사 시설인 장용영을 혁파하였다. 1803년 수렴청정을 철회했으나 순조비인 순원왕후의 삼간택 건과 관련하여 자파가 탄압을 당하게 되자 다시 수렴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